

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판정평가 기준 개정

1. 현행

건강관리구분		판정기준
A		정상청력,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자
C	C ₁	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(요관찰자) 1) 청력손실이 있고 2)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)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
	C ₂	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1)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자(요관찰자)
D	D ₁	직업성질환의 소견이 있는자(직업병유소견자) 1) 기도 순음청력검사상 4kHz의 고음역에서 50 dBHL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, 삼분법(500(a), 1000(b), 2000(c))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(a+b+c)/3 평균 30 dBHL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)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
	D ₂	일반질환의 소견이 있는자(일반질환유소견자) 1)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발견된 자(요관찰자) 예) 청각장애, 만성중이염 등
R		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 의심자(제2차건강진단대상)

2. 개정

건강관리구분		판정기준
A		정상청력이면서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을 보이지 않는 자* * ① 기도청력수준이 2차검사 대상 미만인 자, 또는 ② 기도역치 삼분법에 대한 청력손실정도가 정상(25 dB 미만)이고 3~4kHz의 고음역 기도역치가 모두 40 dB 미만인 자
C	C ₁	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(직업병 요관찰자) 1) 청력손실이 있고 2)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)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
	C ₂	일반질환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(일반질환 요관찰자) 1)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며 2) D2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
D	D ₁	직업성질환의 소견이 있는자(직업병 유소견자) 1) 순음청력검사상 3~6kHz의 고음역 중 어느 하나라도 기도역치가 50 dBHL 이상이고, 기도역치 삼분법(500(a), 1000(b), 2000(c))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(a+b+c)/3 평균) 30 dBHL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며 2)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
	D ₂	일반질환의 소견이 있는자(일반질환 유소견자) 1)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발견되고 (예) 청각장애, 만성중이염 등) 2) 기도역치 삼분법(500(a), 1000(b), 2000(c))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(a+b+c)/3 평균) 40 dBHL 이상(어음청취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)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
R		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 의심자(제2차건강진단대상)